

의안번호	2203832
의 퇴 인	전진숙의원
회 답 일	2024.11.11.
추계번호	24C3667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 (국가계획의수립등)	○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(제3항) 16. 정신질환자의 자의에 의하지 아니한 입원과, 신체적 제한 등 본인의 동의에 의하지 아니한 치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	의무규정
2	안 제10조 (실태조사)	○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함. 다만, 정신건강증진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(제1항) 8. 비자의 입원 및 격리 등 신체적 제한이 치료에 미치는 영향(신설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7조 (국가계획의수립등)	○ 기시행 사업으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
2	안 제10조 (실태조사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- (안 제7조) 보건복지부에 따르면, 정신질환자의 비자발 입원과 강압적 치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하고 ‘치료친화적 환경 조성’, ‘정신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편’, ‘정신질환자 치료친화적 기술개발’ 등의 계획 수립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비자의 입원 및 격리 등 신체적 제한이 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 진행을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필요
 - 보건복지부에 따르면, 신체적 제한이 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표본 조사를 통한 통계조사가 아닌 전향적 관찰을 통한 임상연구 수행을 통해 가능함
 - 다만, 임상연구의 경우 연구대상자의 규모, 측정 변수, 추적관찰 횟수 등에 따라 소요 비용이 상이하고, 예비연구, 설계연구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므로 현시점에 구체적인 비용을 가정하기 어려움
 - 참고로, 현행법 제10조는 5년마다 실태조사를 수행하되,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,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, 절차 등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 임상조사의 기간과 빈도 등을 확정할 수 없음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